

# -2025년 지역전시 활성화 사업-

## 『**유형①** 미술관 콘텐츠 활용 지역전시』 전시단체 공모요강

문화체육관광부와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는 미술관 콘텐츠의 지역 확산으로 지역 미술향유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<미술관 콘텐츠 활용 지역전시 지원> 사업을 추진합니다.  
 사전 등록 완료한 '참여미술관'의 콘텐츠를 바탕으로 전시를 개최할 '전시단체'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,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### I 공모 개요

**유형① 미술관 콘텐츠 활용 지역전시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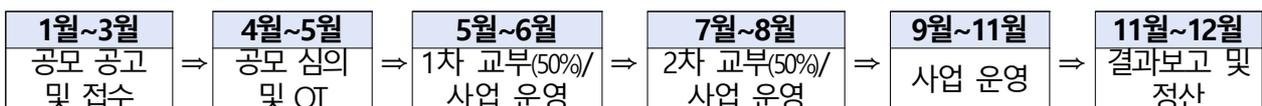
- 미술관이 가진 양질의 콘텐츠(기개최 전시, 소장품 등)를 활용한 지역전시 지원으로 지역 확산 및 향유기회를 확대합니다.
- '참여미술관'은 보유한 콘텐츠\*를 '전시단체'에 대여하며, '전시단체'는 미술관 콘텐츠를 활용한 전시를 지역에 개최하는 방식입니다. [\\*콘텐츠 보기](#) [미술관 콘텐츠 가이드 링크 참고](#)
- 유형1~2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, 사업수혜는 1회만 받을 수 있습니다.

- (공 모 명) **유형①** 미술관 콘텐츠 활용 지역전시 지원
- (접수기간) **공고일~2025년 3월 12일(수), 17:00까지**
- (공모방식) e나라도움을 통한 공모 시행 및 접수, 운영
- (지원대상) 공공·민간의 영리·비영리 단체(기업)
- (지원내용) 전시 및 부대행사 기획·설치·운영 등 직접경비
- (전시사업기간) 2025년 5월 1일(목) ~ 11월 30일(일)
- (지원규모) **①~②** 유형 통합 총 42억원, 유형별 약 30건 내외 선정
  - 국고보조금은 건당 5천만원/7천만원/1억원 내 정액 차등 지원
  - 구간별 정액 지원, 신청주체는 1개 구간 선택 가능
  - 자부담금은 국고보조금의 10% 필수 포함

| 구분  | 국고보조금(A)     | 자부담금(B)     | 총사업비(A)+(B)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1구간 | 50,000,000원  | 5,000,000원  | <b>55,000,000원</b>  |
| 2구간 | 70,000,000원  | 7,000,000원  | <b>77,000,000원</b>  |
| 3구간 | 100,000,000원 | 10,000,000원 | <b>110,000,000원</b> |

\* 총사업비는 공급가액을 기준하며, 면세·고유번호증 등은 부가세 포함 지원 가능

- (참고) 추진일정 \* 추진일정은 일부 변동될 수 있음.



○ **참여미술관 대여 콘텐츠 모아보기 링크(아래)**

▲ <http://115.68.193.117:3000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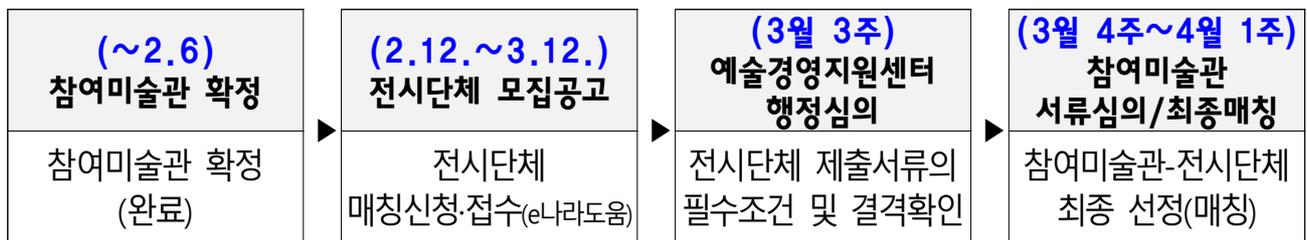
| NO | 구분 | 소재지     | 참여미술관명      | 대여 가능한 미술관 콘텐츠 |         |
|----|----|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|
|    |    |         |             | 기개최 전시(건)      | 소장품(점)  |
| 1  | 공립 | 강원 인제군  | 내설악백공미술관    | 5 건            | 약 200 점 |
| 2  | 공립 | 경남 진주시  | 진주시립이성자미술관  | -              | 244 점   |
| 3  | 공립 | 광주 남구   | 이강하 미술관     | 5 건            | 약 700 점 |
| 4  | 공립 | 충남 천안시  | 천안시립미술관     | 1 건            | 20 점    |
| 5  | 사립 | 강원 영월군  | 국제현대미술관     | 5 건            | 4,000 점 |
| 6  | 사립 | 경기 광주시  | 영은미술관       | 5 건            | 115 점   |
| 7  | 사립 | 경기 남양주시 | 모란미술관       | 1 건            | 38 점    |
| 8  | 사립 | 경기 양평군  | 구하우스미술관     | 3 건            | 700 점   |
| 9  | 사립 | 경기 파주시  |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| 5 건            | 494 점   |
| 10 | 사립 | 경기 파주시  | 아트린뮤지움      | 2 건            | 100 점   |
| 11 | 사립 | 경남 창원시  | 대산미술관       | 7 건            | 50 점    |
| 12 | 사립 | 경북 영천시  | 시안미술관       | 1 건            | 약 50 점  |
| 13 | 사립 | 광주 동구   | 무등현대미술관     | 4 건            | 442 점   |
| 14 | 사립 | 광주 동구   | 은암미술관       | 1 건            | -       |
| 15 | 사립 | 광주 동구   | 조선대학교미술관    | 3 건            | 1,860 점 |
| 16 | 사립 | 부산 금정구  | 디오티미술관      | 3 건            | -       |
| 17 | 사립 | 서울 은평구  | 사비나미술관      | 5 건            | -       |
| 18 | 사립 | 서울 종로구  | 자하미술관       | 1 건            | 12 점    |
| 19 | 사립 | 서울 종로구  | 토탈미술관       | 2 건            | 40 점    |
| 20 | 사립 | 서울 종로구  | OCI미술관      | 1 건            | -       |
| 21 | 사립 | 충남 아산시  | 당림미술관       | -              | 20 점    |

※ 매칭하고자 하는 미술관 소재지 및 서울에서는 전시개최 불가합니다. (시/군 기준)

※ 콘텐츠별 자세한 정보는 모아보기 링크로 확인합니다.

※ 공모기간 간 참여미술관에 콘텐츠 대여문의 가능합니다.

○ **(참고) 매칭방법**



\* 운영상황에 따라 일정과 방법은 일부 변동될 수 있음.

○ (지원자격) 공공·민간의 영리·비영리 단체(기업) ※ 단체(기업)의 소재지역은 무관

|                  |  |
|------------------|--|
| <b>지원대상</b>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최근 3년간('22~'24년) 신청주체가 주최주관한 시각예술 전시개최 실적 1건 이상 보유</li> <li>• 사업자등록증(개인/법인) 혹은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공공·민간의 영리·비영리 단체</li> <li>※ 지역전시 활성화 사업 지원 수혜는 유형 무관 연간 1회로 한정함.</li> </ul>   |
| <b>지원전시</b>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시각예술(미술) 전시에 한정</li> <li>• 작가(국내외)/작품(장르) 등 제한 없음</li> <li>• 전시장소 제한 없음</li> <li>• 전시전용면적 350㎡(약 100평) 이상의 공간만 지원 가능</li> </ul>   |
| <b>지원불가 대상</b>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 미술관/박물관</li> <li>•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 기업(단체)</li> <li>• 대표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단체</li> <li>• 한국 사업자등록번호를 소지했으나, 국내에서 활동하지 않는 단체</li> <li>• 지원 신청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단체는 선정대상에서 제외</li> <li>• 동 사업으로 보조금, 지방보조금, 중앙문예기금(한국문화예술위원회) 중복 수령 불가</li> <li>• 학교(초, 중, 고교 및 대학교) 재학생으로 구성된 단체(동아리)</li> <li>• 기획재정부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의 2 (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)에 해당하는 단체</li> <li>• 문화체육관광부 「국고 보조금 운영 관리 지침」 제7조 제4항(보조사업자 선정 기준)에 해당하는 단체</li> <li>• 「예술인관리보장법」 제13(불공정행위의 금지)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단체 및 개인</li> <li>• 「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,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7조 제2항 제2호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 (다만,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,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) - 「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 제외</li> <li>• 성희롱·성폭력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</li> <li>•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</li> <li>• 법인·단체 또는 대표자가 임금체불 등의 문제를 일으킨 경우</li> <li>• 기 선정된 지원사업에 따른 정산 잔액, 지원금으로 발생한 이자, 환수금 등 센터가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</li> <li>• 예술경영지원센터로부터 지원금을 교부받아 당해연도 동시 수행하는 지원사업이 3개 이하임을 파악할 수 없는 자(단, 지원금이 1억원 이하인 지원사업은 제외)</li> </ul> |
| <b>지원 불가능 전시</b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매칭하고자 하는 미술관의 제공 콘텐츠는 일부 변동 가능하나, 코어 콘텐츠는 변경 불가</li> <li>• 서울 전시 개최 불가</li> <li>• 관례적인 회원전/단체전/연례전/학위청구전 또는 학교 단위 졸업작품전 등</li> <li>• 복제(레플리카) 전시</li> </ul>   |

○ (지원조건)

※지원조건 필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야하며, 기준 불충족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음.

| 필수   | 권장  |
|--|-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총괄기획자 선임<br/>*지원단체 내에서 총괄기획자 선임 가능</li> <li>자부담금 10%<br/>*신청한 국고보조금의 10%를 자부담금으로 포함</li> <li>설치·철수, 휴관일 제외 45일 이상 전시개최</li> <li>전시전용면적 최소 350㎡(약 100평) 이상</li> <li>전시해설프로그램 최소 20회 이상 운영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지역예술인(작가·기획자) 연계프로그램 운영</li> <li>유료 전시<br/>*입장료 수익금 발생 시, 전시 관련 자체 사업에 활용 가능 (사전 계획서 제출/승인 必)<br/>*고유번호증 단체는 유료 전시 수행 시, 해당 전시의 실비변상적 비용으로 활용</li> </ul> |

○ (우대사항) 지자체, 공공기관, 민간기업 등 후원/협력(예산 홍보 공간 등) 시 우대

○ (지원내용) 전시 및 부대행사 기획·설치·운영 등 직접경비

- \* 사업비(국고+자부담금)는 공급가액으로만 편성 가능하며, 부가세는 지원금으로 편성 불가
- \* 사업비 편성 시 명확한 산출근거가 없거나 과도한 편성일 경우 심의시 축소·조정될 수 있음
- \* 지원항목의 유의사항 위반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음

| 목   | 세목              | 지원항목(국고보조금/자부담금)                     | 유의사항  |
|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운영비<br>(210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일반수용비(01)       | • 참여작가 사례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참여미술관 콘텐츠 대여료와 중복 불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|                 | • <b>참여미술관 자문사례비</b>                 | 최대 200만원까지 책정 가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|                 | • 외부인력 사례비<br>(외부기획자, 강사, 학술행사, 통번역) | 단, 외부기획자는 총사업비의 10% 초과 책정 불가                    |
|   | 공공요금및<br>제세(02) | • 보험료(전시장, 전시작품 등)                   |   |
|   |                 | 임차료(07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• <b>참여미술관 콘텐츠 대여료(협의)</b><br>• 임차료(전시관/전시물품 등) |
|   | 일반용역비(14)       | • 공간연출(설치/철수) 용역비                    |   |
| • 작품관리(반입/반출) 용역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 • 전시장 지킴이 등 인력대행 용역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 • 전시 홍보, 광고 등 대행용역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   |                 | • 기타 전시운영에 필요한 대행용역비                 |   |
| ※ 주의) 사례비를 제외한 항목은 (세금)계산서를 기준으로 하며, 인적용역 계약 불가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
| 지원 불가항목   |   |
|-----------|---|
| 지원단체의 경상비 | • 소속직원 인건비, 사무실 임대료, 사무용품 구입, 공과금 등     |
| 자본적 경비    | • 지원 종료 후에도 활용 가능한 자산성 물품 등             |
| 업무추진비     | • 간담회 등을 위한 식음료비 등                      |
| 전시 준비비    | • 장소 답사, 준비 등을 위한 교통, 숙박, 유류대 등         |
| 기타        | • 지원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비용, 보조금카드 사용제한 업종 등 |

III

공모 접수

- (접수기간) 공고일~2024년 3월 12일(수), 17:00까지
- (접수방법)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([www.gosims.go.kr](http://www.gosims.go.kr))을 통해 신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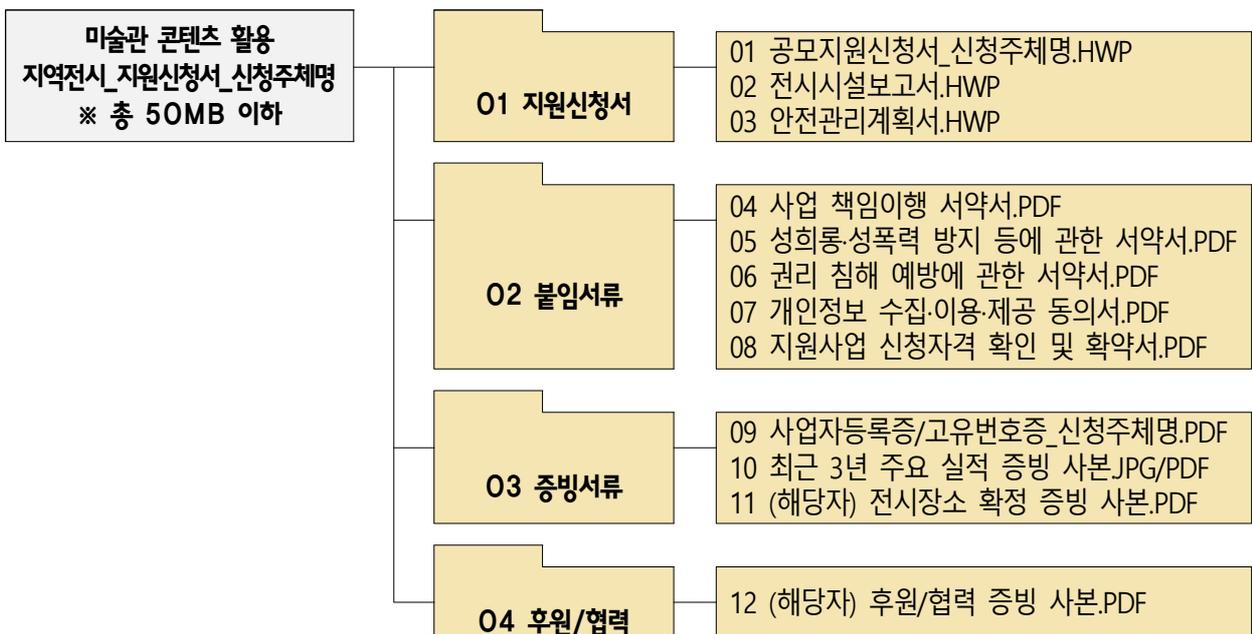


\* 접수기간 내 e나라도움을 통해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유효함 (이용문의)1670-9595

○ (제출서류)

| 순번 | 제출서류                          | 파일형식 | 제출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 | e나라도움 지원신청서                   | -    | e나라도움 시스템에서 작성·제출                |
| 2  | 공모지원신청서 *PDF 제출 불가            | hwp  | e나라도움 시스템에 첨부파일로 제출<br>*총50MB 이하 |
|    | 전시시설보고서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| 안전관리계획서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3  | [붙임1] 사업 책임이행 서약서             | PDF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4  | [붙임2] 성희롱·성폭력 방지 등에 관한 서약서    | PDF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5  | [붙임3] 권리 침해 예방에 관한 서약서        | PDF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6  | [붙임4]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      | PDF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7  | [붙임5] 지원사업 신청자격 확인 및 확약서      | PDF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8  | (해당자) 주요실적, 전시장소, 후원·협력 증빙 사본 | PDF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9  | 사업자등록증 혹은 고유번호증 사본            | PDF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○ (e나라도움 첨부파일 등록방법) \* 아래와 같이 제출서류 정리방식 준수하여 제출



## ○ (신청 유의사항)

- 제출서류는 반환수정 불가능, 서류누락 및 양식 미준수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주체에게 있음
- 작성내용은 공공의 목적으로 공개될 수 있음
- 신청내용과 실제 운영내용이 상이하거나 허위일 경우 사업지원 축소 혹은 제외될 수 있음
- 신청내용 불이행 시 사업 제외 및 국고보조금 환수조치 될 수 있음
- 사업비 편성 시 명확한 산출 근거가 없거나 과도한 편성은 지양하여야 함
- 자부담은 정률에 맞춰 필수 책정하며, 1차 지급분 중간정산시 자부담 전액 소진을 원칙으로 함
- 자부담을 타당한 사유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 사업 정산 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음.
- 과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는 총사업비에서 지출 불가하므로, 반드시 공급가액으로만 총사업비를 편성하여야 함
- 총사업비는 전시사업기간(5~11월) 내에 사용 가능, 사전 및 사후 활용은 불인정함
- 국고보조금은 현금으로 인출할 수 없으며, 사업기간 동안 보조금 및 수익금 통장 해지를 금지함
- 지원기간 동안 사업체는 유지해야하며, 기간 내 휴·폐업 시 지원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음
- 사업 운영은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내 행정규칙을 준수하여 운영하여야 함
- 사업 운영은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(보조금법)»,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, 「예술인 복지법」,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등의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운영하여야 함
- 저작권·특허권·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 및 초상권·성명권 등의 권리를 포함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 일체의 민·형사상 법적 문제가 없어야 하며, 문제 발생 시 사업 제외될 수 있음

## ○ (참고) 참여단체(기업) 의무사항

- 서울을 제외한 지역 전시 기획·개최·운영
- 참여작가의 미술분야 표준계약서 체결
-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오리엔테이션, 성과공유회 등 참석
- 총사업비에 포함되는 자부담금은 전액 소진 및 회계검사·정산
-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도입에 따라 관련 계약 체결 시 가입신고
- 언론 등의 홍보 지원을 위한 콘텐츠 제공 등 적극적인 홍보 협조
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른 의무교육 수수료 및 서약서 제출
- 지원사업 관련 홍보물 등에 후원표기(문화체육관광부, 예술경영지원센터 순)
- 전시기간 중 관람객 대상 만족도조사 필수 진행 및 결과 제출 (최소 200명 이상 참여)
- 전시기간 중 평가를 위한 모니터링시 협조
- 시각예술시장조사\*(구)미술시장실태조사) 설문 응답 필수
- 전시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
- e나라도움을 통한 교부, 변경, 정산, 실적, 정보공시 등 성실 이행
- 총사업비는 반드시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을 이용하여 점검·검증

## IV

## 공모 심의

## ○ (심의방법 및 일정) 3월 3주~4월 1주

| 유형① 미술관 콘텐츠 활용 지역전시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(3월 3주) 행정심의        | (3월 4주) 미술관 심의(서류) | (4월 1주) 최종선정(매칭) |
| 서류/조건 등 결격확인        | 참여미술관-전시단체 매칭 심의   | 최종 선정(매칭) 및 발표   |

\* 일정 및 심의방식은 일부 변동될 수 있음

\* 결과는 e나라도움 및 예술경영지원센터 누리집 공고 및 선정기업 개별 연락

## ○ (심의기준)

| 심의지표          | 비중  | 내용   |
|---------------|-----|--|
| 사업계획의 구체성·타당성 | 40% | - 사업내용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<br>- 미술향유 확산을 위한 홍보 및 관람객 모객 계획의 충실성<br>- 안전사고 예방, 사회적약자를 위한 대책 매뉴얼 등 관리 계획의 구체성 |
| 신청주체 역량       | 30% | - 신청주체 및 총괄기획자의 활동 이력 등 전문성<br>- 최근 3년 이내 전시실적 및 예술현장 기여도  |
| 사업 기대효과       | 30% | - 사업내용의 성과 기대도 및 파급효과<br>- 사업의 주제, 작품·작가 등의 시의성  |

## V

## 문의처

## ○ 사업 문의

- (이메일) [arts@gokams.or.kr](mailto:arts@gokams.or.kr)

- (전화) 02-2098-2927, 02-708-2281

※ 문의 가능 시간 : 평일(월~금) 10:00~17:00 (\*점심시간 12:00~13:00 제외)

## ○ e나라도움 이용 문의

- (전화) 1670-9595

- **(지자체·공공기관·민간기업 등 후원/협력 시 우대)**
  - 지원신청서 제출 시 후원/협력 확정증빙을 제출한 경우, 심의에서 동점자 발생 시 우대
- **(전시장소)**
  - 전시장소는 서울 및 매칭하고자 하는 미술관의 소재지역(시/군 기준) 외 지역에서 개최 가능하며, 국·공·사립 미술관 및 보유공간, 복합문화공간 등 모두 가능
- **(전시기획)**
  - 전시 참여작가, 작품, 장르의 별도 제한 없으며, 기 운영된 전시도 참여 가능함.
  - 단, 관례적인 회원(단체)전, 학교 단위 졸업작품전, 복제(레플리카) 전시 등 지원 불가
- **(전시 운영기간)**
  - 전시개최 및 운영은 작품 등의 설치·철수 일정 제외 주말을 포함하여 45일 이상 필수

※ 전시공간의 자체휴관일도 운영일에서 제외하여야 함.
- **(총괄기획자)**
  - 전시 기획·운영 등의 전 과정을 총괄 관리하는 자로 신청주체의 내부 소속인력, 외부 전문가 중 선임할 수 있음.
  - 단, 신청주체의 내부 소속인력이 총괄기획자인 경우 사업비에서 기획인건비 지급 불가
- **(자부담금)**
  - 신청주체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으로 e나라도움 시스템에 등록하여 운용해야 함.
  - 신청 구간에 따른 자부담금액은 정률이며, 잔액 없이 100% 소진을 필수로 함.
- **(전시해설(도슨트) 프로그램)**
  - 전시장 방문객을 위한 전시해설(도슨트) 프로그램을 말하며, 대면을 원칙으로 함.
- **(지역 작가·기획자 매개 프로그램)**
  - 전시 개최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작가·기획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말함.
  - 프로그램의 형태는 제한 없음. (아티스트 토크·네트워킹·교육·강연 등 형태 무관)
- **(입장료)**
  - 입장료는 무료/유료 선택 가능하며, 유료 전시를 권장함.
  - 입장료로 인한 수익금 발생 시 전시 관련 자체 사업에 활용 가능함.
  - 단, 수익금 활용 계획서 제출 및 승인 절차 필수

※ 신청주체가 비영리(고유번호증 보유) 유형인 경우, 입장료 수입은 해당 전시의 실비변상적 비용으로 활용하여야 함.